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6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8.

발 의 자:기동민·김원이·한준호

강훈식 • 박용진 • 임호선

안민석 • 이정문 • 임종성

김병기 · 최인호 · 도종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·확정되며 소액으로 탈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%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2014년 1월 1일 '전자수입인지의 도입'에 따라 워터마크, 일 런번호,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.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, 전문직 종의 수임자료,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및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 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임.

따라서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 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300%는 과중한 측면이 있 고,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음.

이에 타세목의 '기한 후 신고'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(경정)전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시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지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보완하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함(안 제47조의4제9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4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

- 1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납부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- 2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납부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
- 3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납부 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)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

이 법 시행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햀 개 정 안 혂 제47조의4(납부지연가산세) ① ~ 제47조의4(납부지연가산세) ① ~ ⑧ (생략) ⑧ (현행과 같음) ⑨「인지세법」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 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 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단서 신설> -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 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1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<신 설>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납부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10 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<신 설>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 한 후 납부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 당하는 금액

<</td> 3. 과세문서 작성일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납부를 한 경우: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

하는 금액